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김진규

서울신문 편집위원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신문에 있어 정정기사는 대단한 불명예이다. 독자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지만 오보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가능한 한 신문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정정기사를 당당히 취급함으로써 오보로 잃은 독자의 신용이상의 것을 도리어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면보도의 문제점

전 동양통신사 사장 김성곤(작고)씨가 한국언론의 좌표를 촌평한 말이 생각난다. 『일본에서 보면 한국신문의 기사는 명예훼손투성이요, 미국에서 보면 일본신문의 기사 또한 명예훼손투성이야』 두고 두고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한 귀절이다. 이것은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과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가 반비례한다는 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건화 된 것은 일제하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 여건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 일본에서는 지난 65년부터 71년 사이의 7년 동안에 야기된 보도기관에 의한 명예훼손·프라이버시침해 사건만도 1백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이 비교적 적은 것은 보도기관들이 명예훼손이 될만한 보도를 삼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식이 얕은데 그 원인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권리의식자체가 문화수준과 상통하여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사건이 많은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문화수준의 향상과 비례해서 명예훼손(프라이버시침해 포함)에 관한 시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행헌법 제 20 조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에 대한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언론은 아직까지 사건보도를 할 때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의 윤경화노파 피살사건과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은 더더욱 그 도가 현저했다. 윤노파 피살사건의 경우 보도기관은 죽은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파헤쳤다. 심지어는 그녀의 옛 애인과 찍은 사진까지 크게 실었다. 여대생 피살사건의 경우도 처음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된 장모군이 당한 수모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검찰에 의해 정모군이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장군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경찰이 저지른 잘못은 말할 것 없고 장군을 진범처럼 단정해서 보도한 언론의 자세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언론의 보도자세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우선 경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정확한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범인을 지목한 점, 혐의를 받은 고숙종여인과 대학생 장군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점,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고여인은 11일 동안, 장군은 16일 동안이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이 불법억류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도기관이 영성한 경찰수사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장구를 친데 있다. 언론은 피살자의 주변상황을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노출시켰고, 경찰수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고여인과 장군을 진범인 것처럼 보도했다. 경찰이 정황조사를 거듭해 기자의 취재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구름 속을 헤매는 동안 경쟁의식이 겹쳐 솔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검거했을 경우 어디서부터 범인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옳느냐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의 관례로는 구속영장이 들어간 단계에서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왔는데 이 두 사건의 경우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 이점에 관해서는 그 당시 언론기관 자체내에서도 「왜 인권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느냐」는 소리가 높았으며, 혹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기자 자신이 인권을 무시당한 적이 많아 남의 인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타성이 생긴 것은 아닐까……』하고 자성하기도 했다. 『육체적 상처는 날이 가면 아물지만 펜에 상처받은 자국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격언은 언론에 의해 받은 명예훼손이 얼마나 아프고 중대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은 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권리를 존중하는 자세

미국에서는 처음 기자가 되는 젊은이에게 선배들이 충고해 주는 말이 있다. 『자네 뒤에는 늘 자네를 상대로 고소할 사람이 10명쯤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근년에 와서 미국의 신문계는 언론의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데다 배상금액이 엄청나게 높아 골치를 앓고 있다. 패소 그 자체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배상액의 인플레이 현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봄 일리노이주 「앨튼 데레그라프」 지가 명예훼손 재판에서 9백 20 만 달러(약 66 억원)의 손해배상을 과하는 배심원판결을 받는데 충격을 받아 최근엔 20 개 이상의 보도기관, 보험회사 등이 모여 명예훼손재판 피고를 위한 레소스센터(LORC)가 뉴욕시 록펠러센터에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 센터는 명예훼손 재판의 피고측에 대해 정보나 조사업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아래 설립되어 관계서류의 수집, 계쟁 중인 재판의 감시 등을 하고, 특히 법정업무의 원조에 힘을 쏟고 있다, 지원단체로는 미국신문발행자협회(ANPA), 미국신문편집자협회(ASNE)를 비롯, 「워싱턴 · 포스트」 지, 「뉴욕 · 타임즈」 지 등 미디어와 수개 보험회사가 있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1968 년 「요미우리신문 대 전 형사」 간의 사건에서 동경지재는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일본사상 처음 고액인 1 백만엔을 배상토록 판결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가장 고액의 배상청구를 한 사건은 75 년에 있는 「A 일보 대 양정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법정 밖에서 타협이 이뤄지긴 했으나 배상청구액이 1 억 5 천만원에 이르렀던 것은 기억할 만하다. 하지만 생명신체의 값은 오르는데 비해 인격의 침해에 대한 평가는 지나칠 정도로 소액이며, 이것이 신문 등 보도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을 조장시키는 한가지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며, 앞으로는 심심찮게 언론과 인권침해 · 명예훼손 간에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

언론자유와 남용을 배제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거론과는 별도로 언론(자유)의 남용이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명예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펜의 폭력」에 관한 비난이 쌓인다면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도리어 신중을 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무섭다」는 말이 있다. 사실 신문은 매우 큰 위력을 갖고 있다. 신문에 뭔가가 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가령 기사에는 아무런 허식이 없다는 치더라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치명적이 된다. 더욱이 범죄혐의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 신문에는 매대로 일방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사건보도가 나올 때가 있다. 특정인의 활동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아마 그 사람 자신의 장래, 혹은 적어도 수년간의 생활은 큰 장애를 입게 된다. 신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신문기자이면 다 자각하고 있다. 가령 가난한 집안의 여대생이

친척에게 빌려 가까스로 등록금을 마련해 등록하러 가던 중 소매치기를 당한 기사가 신문에 나면 등록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독지가의 성금이 답지하는 경우를 본다. 그보다 더 딱한 경우도 신문에 나지 않으면 묻혀버리고 말지만 일단 「신문에 보도한 딱한 사정」은 곳곳에서 온정을 불러 일으키는 사례가 숭하다. 그런데도 「신문의 책임이 중대하다」 「기자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등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은 신문기자가 신문이 무서운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거나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지 때문이다.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요소는 시간과 경쟁심. 그리고 사명감이 지나칠 때이다. 신문의 과다경쟁이 기자의 경쟁심, 공명심을 자극해 상계를 벗어난 행동을 하기에 이른 때는 많다. 사명감이 어디까지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미묘하다. 원래 신문기자라는 직업은 비정한 것이어서 취재상대가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해서 일일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기사를 쓴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그 사명감이 자칫하면 신문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빚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묘한 동물이어서 같은 경험을 몇 번 되풀이 하는 가운데 반응이 둔해진다. 가령 사건기자가 살인현장을 몇 번 보면 처음에는 바로 보지 못하던 사체도 아무렇지 않게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신문의 무서움도 되풀이 되는 속에 둔해지는 수가 있다. 자기로서는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해도 일반의 상식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자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가 있다. 「신문기자가 책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적으로 인권을 무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비난을 당하는 것은 있을 법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류의 오보를 피할 수 있을까…… 언론의 자유가 수반하는 책임에는 여러 가지 면이 생각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면이 중요하다. 그 하나는 개인에 대한 책임이다. 즉 기자가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을 때의 책임이다. 둘째로는 특정개인이 아니라, 넓게 사회일반·공공에 대한 책임이다. 말하자면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신문이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 말할 것 없다. 형법 제 307 조(명예훼손) ①②항에 그 규정이 있다. 제 307 조 ①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하고 규정돼 있어서 사실이 있던 없던 「공연히」 쓰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지만 신문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로 ②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이 적용된다. 신문은 공공적인 것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편집발행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신문으로 봐서는 매우 관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했을 경우이다.

여기에는 허보와 오보의 두 종류가 생각된다. 그런데 전혀 근거없는 허보는 오늘의 신문에선 거의 볼 수 없다.

오보의 원인과 방지

오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서 오보를 했는지가 생각되지 않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있다. 데스크나 편집, 교정담당자의 기술적인 미스가 원인인 것은 별도로 하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취재기자의 부주의이다. 더러 있는 일이지만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는 수가 있다. 이것은 취재기자가 마감시간에 쫓겨 냉정성을 잃거나 정신이 산만하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함정이다. 이러한 미스를 했을 때는 해명의 여지가 없다. 마감시간에 쫓겼다 해도 각 사의 상황은 비슷하다. 취재기자가 발표를 듣거나 취재를 할 때는 진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는 취재기자의 파고들기 부족에서 일어난다. 이 파고들기의 부족에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이 입을 다물어 취재기자에게 만족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 이럴 때 취재기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쓰게 마련이다. 이런 과정에선 아무래도 비약이 있다. 오보의 원인이 되기 쉽다. 단 신문기자는 경험이 풍부해지면 사건에 관해서도 감이 움직여 어설픈 취재로 적당히 맞춰 감에 의해 기사를 쓰는 수가 있다. 조금 더 파고들면 다른 상장이 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신문기사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충실하여 사실의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철칙이다.

셋째는 취재기자의 지레짐작에서 일어나는 수가 있다. 가령 오직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먼저 증회측을 연행하면 다음에는 당연히 수회측에 수사의 손이 미치고 이들의 자백을 토대로 수사가 확대 된다. 이런 일련의 순서는 사건기자이면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된다. 그래서 수사당국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확증은 없지만 당연히 어떤 진전이 기대되면 99%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쓰는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빗나가면 도리없이 오보가 되는 것이다.

네번째는 뉴스소스의 발표 등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오보를 하는 일이다. 이것은 형사가 살짝 뉴스를 제공해 줄 때 일어나기 쉽다. 보통 경찰간부가 발표를 할 때는 그들도 책임상 충분히 조사한 뒤 발표하기 때문에 잘못은 적다. 설사 있어도 그들의 책임이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더라도 신문의 책임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선의 형사들이 호의로 뉴스를 살짝

제공해 줬을 때는 그 책임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뉴스소스를 감추는 것은 신문기자 도의의 문제이며, 또 「경찰에서 취재했다」고 해도 상대가 경찰에 확인하면 경찰은 「노」라고 말할 것은 뻔하다. 따라서 형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취재기자가 뒤를 알아보고 기사로 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뉴스제공자에게 취재기자가 타는 케이스다. 가령 민사사건에 계류중인 원고나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신문측은 일종의 피해자 입장에 서지만 취재를 발로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과감하게 오보를 정정해야

오보의 원인으로는 이밖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뒤에 검토해봐서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는 극히 적다. 취재기자든, 데스크든, 편집담당자든, 충분히 배려만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보는 신문이나 신문기자로서 불명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오보에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오보정정의 문제이다. 오보는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고서야 밝혀지는 일이 많으며, 이 항의를 처리함에 있어 신문측에도 반성해야 할 점이 없지 않을 것 같다. 보통 신문사에 전화로 항의를 하면 데스크나 내근기자가 이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마감시간 직전이거나 하면 모두가 바빠 그저 적당히 응답하기가 십상이다. 대개는 상대의 항의내용을 들은 뒤 「취재기자에게 알아보고 사정을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다. 그 뒤엔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며,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럴 때 또다시 상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성의있는 회답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상대의 항의내용을 알고나 있으면 다행이지만 처음의 담당자가 없든가 데스크가 바뀌었든가 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다들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권리의식이 희박하여 오보를 한 경우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정정을 하면 명예훼손사건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보의 지적이나 정정청구가 있으면 처음부터 성의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정에 관한 또 한가지 문제는 『신문이 정정기사를 게재할 경우,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사로 날아오는 항의문에 『처음기사와 같은 단수로 정정기사를 내라』고 하는 요구가 더러 있다. 실제문제에 있어 이것은 곤란하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최하단의 구석에 되도록이면 적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신문에 있어 정정기사는 대단한 불명예이다. 독자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지만, 오보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가능한 한 신문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정정기사를 당당히

취급함으로써 오보로 잃은 독자의 신용이상의 것을 도리어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을 몰아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80 년에 엄청난 허위 기사를 실어 대신문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여기자 「제니 · 쿠크」가 쓴 「지미의 세계」 기사는 플리처상을 노려 꾸민 가짜 기사였다. 쿠크는 플리처상을 탔다. 그러나 가짜 기사임이 드러나자 「포스트」지는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한 뒤 장문의 조사보고서를 자기신문에 전문을 실었다. 「포스트」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엄청난 거짓 기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반응도 신문 1 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역시 세계적인 대신문다운 책임감과 아량을 보인 것이다. 북구의 일부 신문은 정정 기사를 자진해서 다루되, 오보한 크기로 다룬다고 한다. 독자대중에 대한 그들의 신문 윤리는 이래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 신문협회의 발행규칙도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명예와 위엄을 지키려는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는 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 논평은 피해야 한다. 시인할 만한 답변과 정정에 앞서 보도된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스웨덴의 언론이 이처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언론은 어딘지 옹졸한 것 같기만 하다.

기사게재의 원칙

프라이버시(privacy)의 경우는 어떤가……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권리, 다시 말하면 헌법상 행복추구의 권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의 주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프라이버시의 권리 침해는 사회적 평가를 손상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만으로 성립된다. 개인의 권리를 대폭 인정하고 있는 근대 사회의 법개념이다.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부딪칠 때가 왕왕 있다. 「알려지고 싶지 않는」 권리를 무한히 인정하면 신문 보도 특히 사회면 기사는 거의 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한계가 논의되는 것이며, 이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신문으로서 이 프라이버시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특히 신문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프라이버시를 되도록이면 지켜준다는 자세로 취재 보도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 문제로 신문은 프라이버시를 얼마만큼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사건 보도에서는 때때로 침해가 인정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때도 있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어느 일류 회사 과장이 같은 회사 여사와 둘이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에게 현금 2 만원을 갈취당했다. 피해자는 이를 곧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각 사 경찰기자가 알았다. 한 신문사의 경찰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일 하오

○시쫘 남산공원에서 ○○회사 ○○과장 김○○씨가 같은 회사 여사원 박○○양과……』 그 신문사에서는 이 원고를 초판에는 그대로 쓰고, 최종판에서 데스크가 여사원 ○○양의 이름까지 기사화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기사를 고친 일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나오면 회사내는 말할 것 없고, 두 사람의 가정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다. 나쁘게 되면 두 사람의 장래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피해를 당하고 곧바로 신고한 사람은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여사원과……』 혹은 『여사원과 같이 놀던 ○○과장이……』 따위의 기사를 쓰면서도 사건기자로서는 별다른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때도 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여성이 살해됐다. 그녀에게는 국민학교 교사인 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한 신문사에서 이 살인사건의 기사를 『○○국민학교 ○○교사의 누나가 살해됐다』고 쓰는 바람에 그 교사는 국민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끔 된 일이 있다. 남동생인 교사는 누나가 살해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도 그 기사 때문에 살인사건의 과중에 든 사람같이 보인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기사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않는가는 별도로 하고, 신문은 가령 일반적인 기사라도 독자에게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 이전부터, 신문의 윤리로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윤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프라이버시의 법개념이 아직 미숙하다는 등의 얘기는 어떤 의미에선 문제 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사 모두 지면이 늘어 각 기사에 밀도가 있고, 기사의 길이도 전체적으로 길어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사의 본질에서 떠난 내용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오늘의 기자는 취재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이것은 위험신호이다. 그 기사에 빼놓을 수 없는, 말하자면 본질적인 부분 이외에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내용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취재한 전부를 다 표현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취재기자가 뉴스의 본질을 잡아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또 정확히 그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데이터와 어느 데이터를 엮어 맞출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기사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취재기자가 모은 데이터를 1백%라고 하면, 사건의 본질에서 먼 부분 혹은 부정확한 부분 20%를 뺀다. 그 다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10%가량 제외한다. 그리고 남는 70%로 기사를 만든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요는 이러한 배려아래서 원고를 써야만 한다는 뜻이다. 1행의 문장이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죽일 위험마저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든 프라이버시든, 법적인 제약이 있든 없든, 신문은 스스로 윤리기준에 따라 보도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문은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메스일 수 있으나, 폭력단이 갖고 있는 단도는 아니다. 신문은 결코 흥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것을 목적으로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반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의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4월 29일 헌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이후 올 4월 10일까지 1년 동안 총 31건의 언론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했는데, 이를 언론사별로 보면 19개사 51건이 중재대상이 된 셈이다.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사생활침해가 전체의 74%인 23건을 차지하고 있다. 처리결과는 51건 가운데 취하가 45%인 23건으로 가장 많고, 불성립이 25%(13건), 합의가 22%(11건)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신청건수는 중앙일간지 28건(54.9%), 지방일간지 8건(15.7%)으로 일간지가 70%를 웃돌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도중에 취하한 사건이 이토록 많은 것은 대부분 피신청 언론사의 막후접촉에 의한 것으로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명예훼손사건의 2/3 가량은 법정 밖에서 타협으로 해결을 본 것이 통례였다.) 언론침해의 피해자인 중재신청자가 언론사의 회유를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침해사실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신청을 취하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나, 당장 시정했으면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출석률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석 요구 39건 가운데 출석율은 56.4%(22건)에 불과해 중재불성립이 속출하는 것은 보도기관의 무성의로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중재신청인도 독자라고 생각한다면, 피신청언론사는 응당 중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1백% 응해야 마땅할 줄 안다. 피해사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경우 과감하게 정정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언론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정치학 석사)
-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 편집부국장, 한국기자협회회장 역임
- 저술 : 「기자의 세계」
- 현재 서울신문 편집위원